

# 勞動分配率 算定上의 差異가 勞使紛糾에 미치는 영향

金 在 源\*

〈目 次〉

- I. 序 言
- II. 勞·使의 立場에서 본 勞動分配率 算定上의 差異點
- III. 勞·使의 立場에서 본 勞動分配率 變動推移의 比較·  
分析：韓國의 경우
- IV. 結 言
- 參考文獻

## I. 序 論

우리경제는 1986년 상반기 이후 低油價, 低率의 國際金利 및 달러貨의 약세로 소위 三低時代를 맞아서 景氣의 活性化가 지속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달러貨의 약세 또는 엔貨의 약세는 輸出伸張에 活力素가 되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같이 경제의 活性化가 지속되는 시점에서 勞使關係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는 두가지로 요약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景氣가 침체기에 들어서면 雇傭의 減少 등으로 勞使間의 對立은 오히려 적어지고 勞動組合의 賃金引上 壓力도 弱化되어 勞使關係의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나 好況期에 접어들면 이것이 表面化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둘째는 최근 소위 三低의 이득이 기업가에게는 다소 과소평가된 반면 근로자에게는 과대평가되고 三低의 이득이 業種別로 다르게 나타날 경우, 근로자의 賃金上昇에 대한 높은 期待值가 오히려 產業의 對內外 競爭力を 弱化시키게 되거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사실상 勞使關係의 중요성은 景氣의 好況與否에 관계없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漢陽大學校 經濟學科。

우리나라 劳使紛糾를 原因別로 大別해 보며 가장 큰 요인이 賃金引上과 賃金滯拂로 나타나 있으며, 특히 1980年대에 들어 賃金引上要因에 의한 劳使紛糾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調査들을 보아도 劳組가 담당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은 賃金引上이나 厚生福祉의 向上 등 經濟的인 側面이 강조되고 있다.<sup>1)</sup>

최근에 들어 劳·使間에 賃金引上率에 대한 절충이 지연되거나 賃金引上率에 대한 劳·使間의 對立에 의한 劳使紛糾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劳·使間의 賃金引上率에 대한 절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原因에 대한 研究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經濟政策 分野中 가장 어렵고도 낙후된 분야의 하나가 소위 賃金政策인 것으로 보인다. 劳·使間의 賃金妥結을 어느 면에서 보면 劳·使間의 自律的 協商에 맡기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어느 면에서는 아직도 政府의 賃金 guideline이 존재하고 있는 듯 하나 이 경우에도 賃金 guideline 政策은 政策目標가 一貫性이 결여되어 있고 뚜렷한 基準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sup>2)</sup> 앞으로 1988년부터 最低賃金制가 실시됨에 따라 賃金政策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政府의 賃金 guideline의 比重은 전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最低賃金의 更新周期가 原案은 3年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으나, 마지막 合意過程에서 每年 更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每年 最低賃金率을 更新할 경우 어떤 基準에 의해서 調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提起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最低賃金制의 도입은 低賃金 근로자의 最低生計費保障이라는 본래의 意圖 이외에 最低賃金率의 更新 또는 運動(indexation)이 궁극적으로는 賃金 guideline의 역할까지 담당하게 될 可能性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즉 最低賃金制의 導入은 最低生計費의 保障이라는 목적에만 충실하는 것이 市場價格機構의 고란요인을 極小化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아 最低賃金率의 決定이 賃金 guideline과는 관계가 적은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이나, 현실적으로 劳·使·政 또는 學界의 代表들로 구성된 委員會에서 每年 決定되는 最低賃金率이 賃金 guideline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賃金政策을 單純화시키면 대체로 勞動의 最低生計費保障을 주장하는 意見과 經總(經營者 總協會)의 生產性에 相應하는 賃金率의 調整이라는 두 가지相反된 賃金指針이 對立되는 가운데, 政策의 역할은 주로 生產性 上昇範圍內에서의 賃金引上来 장려하되 各種 賃金隔差(學歷別·性別 등)를 줄이는 方案이 주종을 이루워 왔다고

1) 金環東, 「勤勞青少年의 社會意識과 劳使關係觀 研究調查」, 『疎外에서 參與로』, 高麗大學校 開校 80週年 및 勞動問題研究所 創立 20週年 記念세미나 論文集, 1985.11 및 勞動部, 『노동 통계연감』, 1985 參照。

2) 金秀坤, 「勞·使關係의 現況과 制度改善方案」, 『勞·使關係 政策課題와 方向』, KDI, 1983.2.

볼 수 있다.<sup>3)</sup> 여기서 중요시해야 할 점은 最低賃金制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勞總에서는 賃金指針의 주요 기준으로 最低生計費를 生產性 向上보다 더 강조해 왔다는 점이다. 즉 労·使間의 賃金水準이나 賃金率의 引上을 보는 見解에 큰 괴리가存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労·使間의 見解의 差異點은 무엇이며, 이것이 労·使間의 賃金協商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賃金協商에 따르는 労使紛糾의 極小化를 위해서 시급히 요청되는 연구과제이다. 本論文에서는 賃金協商時 労使紛糾의 큰 要因인 適正賃金率 引上率의 決定方法의 差異點의 하나가 實質賃金率의 算定方式 또는 勞動分配率의 算定方式의 差異에서 비롯된다는 假說을 設定하고, 이 假說에 의거하여 實質賃金率 또는 勞動分配率 算定方式의 差異가 어떤 면에서 勞金妥結을 어렵게 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本論文의 2節에서는 労·使의 立場에서 본 實質賃金率 및 勞動分配率 算定方式의 差異點을 提示하고자 한다. 3節에서는 1980年-1985年 동안의 9個 產業大分類 및 9個 產業小分類 製造業資料를 이용하여 勞動分配率의 變動推移를 算定하고 이의 變動推移를 比較·分析하며, 結論은 4節에 나타나 있다.

## II. 労·使의 立場에서 본 勞動分配率의 策定上의 差異點

기업의 短期勞動需要理論에 의하면 기업의 최적고용수준은 다음의 균형조건이 성립하는 점에서 이루워진다.

$$(1) MP_L = \frac{w}{P}$$

여기서  $MP_L$ 는 勞動의 限界生產力,  $w$ 는 (時間當) 名目賃金率,  $P$ 는 產出物價格을 나타낸다.

이제 (1)式에 나타난 變數들의 測定單位를  $VTR$ 을 생산하는 업체를 想定하여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w = \text{勞動 1單位當 (例. 1人1時間) 賃金率} \\ = \text{WON / LABOR}$$

3) 韓國經營者總協會, 「사업보고서」, 各年度

「賃金實務資料」(86年版), 1986. 2.

, 「勞動經濟年鑑」, 各年度

韓國勞動組合總聯盟, 「사업보고」, 各年度

「1986年度 勞動賃金指針」, 1985. 10.

$$(3) P = \text{產出物 1 單位當} (\text{例. } VTR \text{ 的 台當價格}) \\ = \text{WON} / \text{OUTPUT}$$

$$(4) MP_L = \frac{w}{P} = \frac{\text{WON/LABOR}}{\text{WON/OUTPUT}} = \frac{\text{OUTPUT}}{\text{LABOR}}$$

(例. 근로자 1人이 1時間當 生產하는 VTR 台數)

기업의 입장에서는 労動生產性을 노동1단위가(例를 들어 근로자 1人이 1시간에) 생산한 產出物의 量으로 算定한다. 즉 기업은 名目賃金率을 產出物價格으로 디플레이트 시켜서  $MP_L$ 을 算定하고자 한다.

이제 労・使가 每年 賃金率을 協商한다고 가정하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每年 労動의 限界生產力 ( $MP_L$ )을 測定하여 實質賃金水準을 算定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일 뿐만 아니라 費用도 많이 들 것이다. 기업의 短期 労動需要理論모델에서는 労動이 同質의이라고 假定한다. 労動이 同質의이라는 가정은 一見 人間資本理論과 對立되는 터무니 없는 非現實的인 가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模型에서 労動이 同質의이라는 가정은 우리가 기업의 노동수요를 논의할 경우에는 特定 同質의 労動그룹의 노동수요에 논의를 局限시켜야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例를 들어 金迪教・金在源 (1986)의 韓國電子工業의 技術隔差의 測定의 研究에 사용된 資料에는 労動을 70分類의 異質의인 労動者그룹으로 나누고 있다. 따라서 企業이 從業員들의 賃金 引上率을 그들의 限界生產力의 上昇에 따라 調整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特定 企業 또는 事業體에 屬한 異質의인 從業員을 되도록 同質의인 労動者그룹으로 細分하여 이를 그룹의  $MP_L$ 의 變動推移를 고려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 위에서 지적한대로 사실상 정확한 推定이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費用이 많이 들기 때문에 通常 1기업 또는 사업체의 平均勞動生產性(즉 從業員 1人當 生產額 또는 附加價值)을 기준으로 하여 賃金引上率을 決定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労使間의 賃金協商時 문제가 되는 것은 個別 異質의인 労動그룹別 賃金引上率의 크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 보다는 전반적인 임금인상률의 수준 또는 附加價值中 總體的으로 賃金(즉 wage bill)이 차지하는 비중(즉 労動分配率)이 중요시될 것이다. 즉 職責 또는 職級이 相異한 労組構成員間의 利害關係를 모두 賃金水準 協商時 논의하는 것은 技術的으로도 어렵고 労組의 힘의 分散을 초래할 가능성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기업의 附加價值中 労動의 몫이 차지하는 비중의 增減이 賃金協商의 主要爭點이라고 想定하자. 즉 우리가 Cobb-Douglas生產函數  $VA = AL^\alpha K^\beta$ 를 가정할 경우 労・使間 임금협상의 주요 관심사는 労動의 分配率(labor share) 또는 労動의 附加價值에 대한 彈力值를 나타내는 Parameter  $\alpha$ 이다. 이제 임금 협상의 기준으로 労動의 分配率

(勞動分配率)을 보는 労·使의 관점은 다음과 같이 서로 相異하다는 假說을 設定할 수 있을 것이다.

企業家의 입장에서 본 労動分配率 :

$$(5) \frac{W_{jt}/P_{jt}}{VA_{jt}/P_{jt}} = \frac{W_{jt}}{VA_{jt}}$$

勞組의 입장에서 본 労動分配率 :

$$(6) \frac{W_{jt}/CPI_t}{VA_{jt}/P_{jt}} = \frac{W_{jt}}{VA_{jt}} \cdot \frac{P_{jt}}{CPI_t}$$

단,  $W_{jt} = j$  事業體(또는 企業)의  $t$  年度 被傭者 報酬 總額 (wage bill); 經常價格

$P_{jt} = j$  事業體(또는 企業)에서 生產되는 產出物의  $t$  年度 價格(指數).

$VA_{jt} = j$  事業體(또는 企業)의  $t$  年度의 附加價值; 經常價格

$CPI_t = t$  年度의 消費者物價(指數);  $CPI$ 는 事業體( $j$ )에 따라 变하지 않음.

式(5) 및 式(6)에 보인 假說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企業의 입장에서 보면 一定 時點에서의 労動分配率은 總被傭者報酬가 附加價值에서 차지하는 比重을 基準으로 할 것이다. 즉 企業은 產出物價格으로 디플레이트시킨 實質 被傭者報酬를 역시 產出物價格으로 나눈 實質 附加價值와 比較하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總計概念이 아닌 1人當 労動分配率을 算定하여도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즉  $VTR$ 을 生產하는 事業體 또는 企業體의 경우<sup>4)</sup> 從業員 1人當 平均 賃金率은  $VTR$  몇 台에 해당되고, 從業員 1人當 平均 附加價值는  $VTR$  몇 台에 해당되는지를 계산하여 労動의 分配率을 算定하게 된다.

勞組의 경우 一定 期間동안 從業員 1人當 附加價值는  $VTR$  몇 台에 해당되며 이것을 從業員들이 購買하는 商品 basket의 物價指數로 디플레이트시킨 實質賃金과 비교하여 労動分配率을 算定하고자 할 것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產出物 價格指數로 디플레이트한 ‘實質’ 平均生產性 概念과 消費者 物價指數로 디플레이트시킨 ‘實質’ 賃金을 이용한 労動分配 뜻을 算定하는 것이 더 意味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의 경우  $W/V$ 로 算定한 労動分配率이 前期보다 높아졌다해도 消費者 物價指數의 上昇

4) 事業體의 定義는 鎌工業 Census 및 Survey에서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업체라 함은 개개의 공장, 작업장, 사무소, 점포, 광산과 같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물리적 장소를 말한다. 이 개념은 대부분의 경우 기업체와 같은 것이나, 특히 수종의 경제활동이 단일기업에 의하여 영위된 경우에는 경제활동의 종류에 따라 그 기업체를 수개의 사업체로 분할할 수 있는 점에서 기업체와 구분된다.”

率이 그가從事하고 있는會社의製品의價格上昇率보다 매우커서 ( $W/VA$ ) · ( $P/CPI$ ) 가낮아지게되면,이는결국購買力側面에서損失을意味하게된다.<sup>5)</sup> 이와는반대로產出物價格指數의上昇率이CPI上昇率보다매우높을경우,購買力면에서본勞動의分配률은근로자에게높은수준으로評價될것이다.즉式(5)와式(6)을비교해볼때, $P/CPI$ 의相對價格이勞·使間賃金協商에미치는영향은中立的(neutral)이아니라는것을알수있다.

이제特定事業體의技術(또는 $K/L$ )이不變하다고假定할때,使用者의경우勞·使賃金妥結의결과勞動分配率이下落했다면,즉 $(\frac{W}{VA})_t < (\frac{W}{VA})_{t-1}$ .賃金協商結果에‘만족’할것이고上昇한경우協商result에‘불만족’할것이다.勞組의입장에서보면勞動分配率이상승한경우,즉 $(\frac{W/CPI}{VA/P})_t > (\frac{W/CPI}{VA/P})_{t-1}$ 일경우,勞組은賃金協商의결과에‘만족’할것이고下落한경우협상결과에‘불만족’하게될것이라고假定하자.또한勞·使는各各勞組및使用者입장에서본勞動推移에만관심이있고,勞·使모두상대방의입장에서본勞動分配率의變動에는무관심하리라고想定하여勞·使의勞動分配率의變化形態에따른勞·使의妥結에대한‘만족’,‘불만족’및‘未定’(indifferent 또는uncertain)을區分한것이表1에要約되었다.이表의意圖는Type1에서Type5로진행될수록勞·使間의賃金締結上의對立이점차深化됨을나타낼수있도록고안된것이다.한가지특기할점은이미예상했던바와같이相對價格比가,즉 $P/CPI$ 가,勞組에유리하게作用할경우勞·使의賃金締結에대한만족도가높으며,그반대의경우불만족도가크게나타난다는점이다.그이유는이相對價格의變動이勞組立場에서본勞動分配率에는영향을미치나使用者의勞動分配率에는영향을미치지않기때문이다.이상을미루어볼때公正去來法,獨寡占禁止法등에의해工產品등의價格決定이市場價格機構이외의要因에의해결정되는경우가적지않은우리의현실을감안해볼때,이런產出物價格에대한統制가勞·使間의賃金協商을매우어렵게하는要因으로作用할소지가크다는점을알수있다.특히最低賃金法이導入되어賃金水準決定時最低生計費基準의중요성이더욱부각될경우企業의勞務management에서의여로는더욱가중될가능성이클것으로보인다.이는근본적인면에서CPI의변동은個別企業의능력이전혀미치지못하는순수한外生變數이기때문이다.

5) 물론同一한事業體에종사하는근로자라할지라도그가購買하는商品basket이모두다르고,商品의間接稅構造가다른경우總計概念의同一한CPI를적용시켜 $W/CPI$ 로실질임금의구매력을평가하는데에는문제가있을수있으나,여기에서는편의상모든종업원의商品basket의디플레이터가同一하다고가정하기로한다.

VTR회사에종사하는종업원이구매하는商品basket의가격지수에VTR가격이미치는영향은미미하거나零이다.즉서로다른사업체에근무하는종업원간의실질임금디플레이터의차이보다이들상이한회사제품가격의변동의차이가훨씬더클것이다.

### III. 勞·使의 立場에서 본 勞動分配率의 變動推移의 比較·分析; 韓國의 경우

우리나라 9個 大分類 產業과 製造業의 9個 小分類 產業의 1980~85年間의 勞動分配率을 韓國銀行에서 發表한 新國民計定 資料를 이용하여 算定하였다.

〈表 2〉에서는 新 SNA에 의거한 產業別 經常價格表示 附加價值가 나타나 있으며, 同一한 資料에서 구한 產業別 被傭者 報酬의 資料가 〈表 3〉에 나타나 있다. 〈表 4〉 및 〈表 5〉에는 產業別 附加價值 디플레이터 및 產出物 價格指數/消費者 物價指數의 相對價格指數가 나타나 있다. 이들을 이용하여 〈表 6〉에서는 企業의 立場에서 본 勞動分配率의 變動推移를, 〈表 7〉에서는 勞組의 입장에서 본 勞動分配率의 變動推移를 算定하였다. 勞動分配率 算定에 관연하여 몇가지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첫째는 企業 및 勞組의 입장에서 본 勞動分配率의 比較를 위해서는 各 企業體 또는 事業體別 微視的 分析이 바람직할 것이나 資料의 制約上 本 論文에서는 巨視的 分配率의 算定에 局限하였다.

둘째로 產出物 價格디플레이터는 GDP디플레이터를 사용하였다. 단 製造業 小分類 產業의 경우 新 SNA 資料가 이용가능하지 않아서 舊 SNA 資料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우리나라 製造業의 경우 內需뿐 아니라 輸出의 比重이 크기 때문에 產出物 價格디플레이터로 都賣物價指數(WPI)를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째로 〈表 4〉에 나타난 產業別 產出物價格 上昇率을 보면 1980年代 安定化 政策이 후 일반적으로 工產品 및 一次產品의 價格上昇이 相對的으로 낮은 반면 二次產業( 특히, 政府·社會 및 個人서비스業)의 產出物價格 指數의 上昇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製造業의 產出價格에 대한 消費者 物價指數의 相對價格比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이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본 實質 勞動分配 뜻의 低下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勞組構成員中에서 製造業 部門에 해당하는 勞組構成員의 比重이 높음을 감안할 때, 이와같은 產業別 產出物 價格指數의 變動推移는 勞使間의 임금체결이라는 면에서 沮害要因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表 5-1〉에 나타난 相對價格指數를 보면 1981~85年 期間中 製造業의 경우 89.9~93.7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農林漁業의 경우도 1981年을 제외하면 82.9~92.3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表 5-2〉에서 보인 바와 같이 製造業 9個 小分類 產業의 경우 1981~85年 期間中 相對價格指數는 1984年の 섭유·의류 및 가죽

산업을 세외하고는 모두 100이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sup>6)</sup>

네째, 〈表 6-1〉 및 〈表 6-2〉에 나타난 바와 같이 特定 產業의 勞動分配率의 變動推移는 1980~85年 期間中 比較的 安定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表 7-1〉 및 〈表 7-2〉에 나타난 바와 같이 勞組의 입장에서 본 實質 勞動分配率의 變動은 同期間中 상대적으로 그 變動幅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相對價格의 變動으로 인한 교란요인이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表 6-1〉 및 〈表 6-2〉에 제시된 觀測된(observed) 勞動分配率이 과연 公正한(fair) 勞動의 分配률을 나타내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Cobb-Douglas 生產函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勞動의 分配률이公正한 分配률을 나타내기 위한 조건은 產出物 市場과 要素市場이 競爭的이어야 한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이 두 市場이 完全 競爭의이라는 假定이 성립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는 2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금체결시 勞·使의 주요 관심사는 각각 그들의 입장에서 算定한 觀측된(observed) 勞動分配률이 前期에 비해 얼마나 增減 했느냐에 달려있다고 假定하였다.

〈表 8-1〉 및 〈表 8-2〉에는 勞·使의 立場에서 본 勞動分配率의 變動推移(前年對比)가 나타나 있으며, 〈表 9-1〉 및 〈表 9-2〉에서는 이 勞·使의 立場에서 본 分配率의 變動推移를 〈表 1〉에 나타난 勞·使間의 得失要約表에 따라 區分하였다. 〈表 9-1〉 및 〈表 9-2〉의 Type 1, 2, 3, 4, 5는 勞·使間의 對立의 深化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Type 1에서 Type 5로 갈수록 勞·使間의 對立이 점차 深化됨을 나타낸다. 또한 팔호내의 表記는 (勞組의 立場, 使用者的 立場)을 나타내며 S, N, I는 각각 '만족(Satisfactory)', '不良족(Not Satisfactory)', 및 '未定(Indifferent 또는 Uncertain)'을 뜻한다. Type 1은 勞·使가 모두 임금협상의 결과에 만족하는 경우이고, Type 2는 勞·使中 한 그룹에서는 만족하나 다른 편에서는 未定인 경우와 勞·使 모두 未定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Type 3은 勞·使中 한 그룹이 불만족이나 다른 편에서는 未定인 경우이고, Type 4는 勞·使中 편은 만족, 다른 편은 불만족인 경우이다.<sup>7)</sup> 마지막으로 Type 5는 勞·使 모두 未定인 경우이다.

6)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1980年代 안정화시책이 실시된 이후 정부의 독과점금지 및 경거래 등 산출물가격에 대한 통제가 제조업 부문에 상대적으로 커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농림어업과 광업(석탄산업 등)의 경우 정부가 산출물가격의 결정에介入할 경우 농민이나 광부 등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이를 가격의 변동이 물가에 미치게 될 영향을 동시에 고려했을 것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이를 부문의 산출물가격의 인상은 상대적으로 억제되어 온 듯하다. 3次產業의 경우는 公共部門 등 가격결정에 대한 정부의介入이 비교적容易한 부문도 있지만 私的부분의 가격결정에 대한介入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경기의 침체가 상대적으로 그產品 가격의 안정화를 초래하였을 가능성도 클 것이다.

7) 〈表 9-1〉의 註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勞動分配率의 变動폭이 (절대치가) 0.5% Point 以下인 경우에는 零으로 간주하였다.

의 결과에 불만인 경우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Type 1, 2는 労·使間의 對立이 적은 경우인데 이때에는 相對價格의 變動이 해당기업체(특히 勞組)에게 유리하게作用해야 성립되며, 労·使間의 對立이 극대화되는 Type 5의 경우는 相對價格의 變動이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에만 성립되는 類型이다. 이제 Type을 나타내는 수치가 労·使對立의 정도를 나타내는 指數라고 가정하고 각 年度別로 平均을 구해보면 產業 大分類의 경우 3.4에서 2.9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労·使 對立의 深化度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表 9-1> 參照). 그러나 製造業의 경우만 보면 1983年, 1984年에 對立 정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1985年 임금체결에 대한 對立 정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表 9-2> 參照) 이는 製造業 部門의 景氣變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表 10-1> 및 <表 10-2>는 <表 9-2>의 資料를 勞組 및 使用者의 만족, 불만족을 時系列로 쉽게 볼 수 있도록 다시 정리한 것이다. 광업 및 건설업의 경우 임금체결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 ‘만족’의 추세가 1984, 1985년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製造業의 경우 近年에 들어 종이제품 및 인쇄·출판업과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労組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IV. 結 言

本 論文에서는 労·使間의 勞動分配率 算定上의 差異가 勞·使紛糾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假說을 設定하고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資料를 가지고 記述的인 分析을 試圖해 보았다. 그러나 本 論文의 勞動分配率의 算定에 技術의 變化(즉 K/L)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었고, 個別 事業體의 資料가 아닌 總計化된 資料를 使用하였다라는 制約點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產出物市場 및 要素市場에 대한 교란요인이 存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最低賃金制의 導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賃金水準이나 引上率에 대한 労·使間의 對立이 深化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本 論文에서 提起하고 있는 勞使紛糾의 한 原因으로서 労·使間의 勞動分配率 算定上의 差異點에 대한 實證的인 研究의 必要性이 증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1) 金暉東, 「勤勞青少年의 社會意識과 勞使關係觀 研究調查」, 『疎外에서 參與豆』, 高麗大學校 開校 80週年 및 勞動問題研究所 創立 20週年 記念세미나 論文集, 1985. 11參照.
2. 金秀坤, 「勞使關係의 現況과 制度改善方案」, 『勞使關係政策課題과 方向』, KDI, 1983. 2.
3. 金迪教·金在源, 「韓國電子工業의 技術水準隔差의 測定에 관한 研究」, 『經濟研究』, 第7卷 第1號, 漢陽大學校 經濟研究所, 1986.
4. 勞動部, 『 노동통계연감 』, 1985.
5. 韓國經營者總協會, 『사업보고서』, 各年度.
6. 韓國經營者總協會, 『勞動經濟年鑑』, 各年度.
7. \_\_\_\_\_, 『賃金實務資料』, (86年版), 1986. 2.
8. 韓國勞動組合總聯盟, 『사업보고서』, 各年度.
9. \_\_\_\_\_, 『1986년도 노동임금지침』, 1985. 10.

〈表 1〉 使用者 및 労組의 立場에서 본 勞動分配率의 變化形態에 따른 勞·使間의 得失要約表

	使用者 立場에서 본 勞動分配率의 變化	使用者 立場에서 본 勞動分配率의 變化	備 考	勞·使 立 場
Type 1(S,S)	$(\frac{W}{VA})^t \cdot (\frac{P}{CP1})^t > (\frac{W}{VA})_{t-1} \cdot (\frac{P}{CP1})_{t-1}$	$(\frac{W}{VA})^t \cdot < (\frac{W}{VA})_{t-1}$	$(\frac{P}{CP1})^t > (\frac{P}{CP1})_{t-1}$ 이 향상 성립; 労·使間의 對立이 국소화되는 경우	勞; 민족 使; 민족
Type 2(S,1)	$(\frac{W}{VA})^t \cdot (\frac{P}{CP1})^t > (\frac{W}{VA})_{t-1} \cdot (\frac{P}{CP1})_{t-1}$	$(\frac{W}{VA})^t = (\frac{W}{VA})_{t-1}$	$(\frac{P}{CP1})^t > (\frac{P}{CP1})_{t-1}$ 이 향상 성립; 労·使間의 對立이 척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勞; 민족 使; 未定
Type 2(I,S)	$(\frac{W}{VA})^t \cdot (\frac{P}{CP1})^t = (\frac{W}{VA})_{t-1} \cdot (\frac{P}{CP1})_{t-1}$	$(\frac{W}{VA})^t < (\frac{W}{VA})_{t-1}$	$(\frac{P}{CP1})^t > (\frac{P}{CP1})_{t-1}$ 이 향상 성립; 労·使間의 對立이 척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勞; 未定 使; 민족
Type 2(I,1)	$(\frac{W}{VA})^t \cdot (\frac{P}{CP1})^t = (\frac{W}{VA})_{t-1} \cdot (\frac{P}{CP1})_{t-1}$	$(\frac{W}{VA})^t = (\frac{W}{VA})_{t-1}$	$(\frac{P}{CP1})^t = (\frac{P}{CP1})_{t-1}$ 이 향상 성립; $\frac{P}{CP1}$ 의 영향이 中立의 특수한 경우; 労·使間의 對立이 척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勞; 未定 使; 未定
Type 3(I,N)	$(\frac{W}{VA})^t \cdot (\frac{P}{CP1})^t = (\frac{W}{VA})_{t-1} \cdot (\frac{P}{CP1})_{t-1}$	$(\frac{W}{VA})^t > (\frac{W}{VA})_{t-1}$	$(\frac{P}{CP1})^t < (\frac{P}{CP1})_{t-1}$ 이 향상 성립; 労·使間의 對立이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勞; 未定 使; 불민족
Type 3(N,1)	$(\frac{W}{VA})^t \cdot (\frac{P}{CP1})^t < (\frac{W}{VA})_{t-1} \cdot (\frac{P}{CP1})_{t-1}$	$(\frac{W}{VA})^t = (\frac{W}{VA})_{t-1}$	$(\frac{P}{CP1})^t < (\frac{P}{CP1})_{t-1}$ 이 향상 성립; 労·使間의 對立이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勞; 불민족 使; 未定
Type 4(S,N)	$(\frac{W}{VA})^t \cdot (\frac{P}{CP1})^t > (\frac{W}{VA})_{t-1} \cdot (\frac{P}{CP1})_{t-1}$	$(\frac{W}{VA})^t > (\frac{W}{VA})_{t-1}$	勞·使間의 對立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勞·민족 使; 불민족
Type 4(N,S)	$(\frac{W}{VA})^t \cdot (\frac{P}{CP1})^t < (\frac{W}{VA})_{t-1} \cdot (\frac{P}{CP1})_{t-1}$	$(\frac{W}{VA})^t < (\frac{W}{VA})_{t-1}$	勞·使間의 對立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勞; 불민족 使; 민족
Type 5(N,N)	$(\frac{W}{VA})^t \cdot (\frac{P}{CP1})^t < (\frac{W}{VA})_{t-1} \cdot (\frac{P}{CP1})_{t-1}$	$(\frac{W}{VA})^t > (\frac{W}{VA})_{t-1}$	$(\frac{P}{CP1})^t < (\frac{P}{CP1})_{t-1}$ 이 향상 성립; 労·使間의 對立이 국소화되는 경우	勞; 불민족 使; 불민족

註: 1) 該當企業 또는 事業體의 技術(또는 K/L)은 一定하다고 본 경우임.

2) 使用者 的 경우  $\frac{W}{VA}$  가 前期에 비해 낮아진 경우 '민족(S, Satisfactory)', 높아진 경우 '불만족(N, Unsatisfactory)'이라고 보았으며, 労組의 입장에서는 '( $\frac{W}{VA}$ ) ( $\frac{P}{CP1}$ )' 가 前期에 비해 높아진 경우 '민족(S, Satisfactory)', 낮아진 경우 '불만족(N, Not satisfactory)', 같은 경우에는 '未定(I)'이라고 보았다.

3) Type 1은 労·使의 對立이 국소화되는 경우, Type 2는 對立이 척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Type 3은 對立이 척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Type 4로 칼수를 労·使間의 對立이 점차深化된다고 볼 수 있다. Type 5는 對立이 국소화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따라서 Type 1에서 Type 5로 칼수를 労·使間의 對立이 점차深化된다고 볼 수 있다. Type 5는 労·使間의 對立이 척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팔호속에 明元된 S, N 또는 I는 労組 및 使用者的 勞動分配率에 대한 민족, 불민족, 미정을 나타낸다.

〈表 2-1〉 產業別 附加價值(GDP)의 变동추이(1)

(單位 : 10億원, 經常價格)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농 립 어 업	5,524.7	7,442.3	7,731.5	8,292.6	9,181.2	10,158.0
광 업	520.0	734.3	772.6	873.1	977.8	1,098.2
제 조 업	11,214.3	13,713.8	14,996.2	17,301.7	20,019.4	21,285.1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786.2	995.1	1,159.0	1,514.0	1,937.9	2,276.3
전 설 업	3,149.8	3,443.3	4,221.5	5,075.4	5,683.0	6,246.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4,967.5	6,166.9	6,906.8	7,743.7	8,872.1	9,721.6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2,915.4	3,893.7	4,616.5	5,277.4	5,789.6	6,210.9
금융 · 보험 ·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4,171.7	4,480.4	4,462.3	5,873.1	6,701.6	8,018.4
정부·사회및개인서비스업	4,721.4	5,884.3	7,155.1	8,215.1	9,033.7	10,138.8

資料 ; 韓國銀行, 『우리나라의 新國民計定』, 1986年 2月.

韓國銀行, 『1985年 國民計定(確定)』, 1986年 12月.

〈表 2-2〉 產業別 附加價值(GDP)의 变동추이(2)

(單位 : 10億원, 經常價格)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음식료품 및 담배	2,268.5	2,811.4	3,204.6	3,589.7	3,848.7	4,098.5
섬유 · 의복 및 가죽	1,979.9	2,527.3	2,635.6	3,009.9	3,416.9	3,505.8
목재 · 나무제품 및 가구	164.5	182.9	181.2	225.4	240.0	234.0
종이제품 및 인쇄출판	418.1	500.4	492.4	553.7	587.4	618.6
화학물 · 석유 · 석탄 · 고무 및 플라스틱	2,591.4	2,924.8	3,183.1	3,591.6	4,076.8	4,439.1
비금속광물제품	557.0	626.2	707.5	897.0	1,000.3	1,017.7
제1차금속제품	720.3	1,011.5	1,156.0	1,269.3	1,455.1	1,501.0
조립 · 금속제품 · 기계 및 장비	2,300.9	2,905.3	3,180.8	3,883.5	5,062.6	5,509.6
기타제조업	213.7	224.0	255.0	281.6	331.6	360.7

資料 ; 〈表 2-1〉과 同一

〈表 3-1〉 產業別 被傭者報酬 (Wage Bill)의 变동추이 (1)

(單位 : 10億원, 經常價格)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농 림 어 업	751.8	907.7	974.4	1,188.2	1,217.2	1,325.5
광 업	369.7	433.3	445.4	497.8	565.6	645.4
제 조 업	4,334.9	5,296.9	5,717.2	6,641.6	7,788.3	8,268.8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145.0	158.9	177.8	287.0	241.6	329.7
건 설 업	1,832.7	1,898.1	2,332.4	2,835.0	3,270.0	3,667.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363.2	1,650.5	1,830.3	2,077.5	2,387.0	2,583.3
운수·창고 및 통신업	1,348.4	1,719.3	1,891.2	2,463.6	2,703.8	2,839.7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1,125.1	1,493.0	1,823.1	2,198.1	2,344.3	2,736.1
정부·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3,995.4	4,995.7	6,082.8	6,965.4	7,653.2	8,594.1

資料 ; 〈表 2-1〉과 同一

〈表 3-2〉 產業別 被傭者報酬 (Wage Bill)의 变동추이 (2)

(單位 : 10億원, 經常價格)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음식료품 및 담배	514.5	619.9	713.4	794.1	900.2	986.6
섬유·의복 및 가죽	1,012.7	1,312.0	1,354.4	1,550.5	1,714.3	1,756.5
목재·나무제품 및 가구	125.4	123.3	107.1	135.3	138.6	132.1
종이제품 및 인쇄출판	232.5	277.3	269.2	296.1	294.0	310.8
화학물·석유·석탄·고무 및 플라스틱	749.7	829.1	912.0	1,060.5	1,148.0	1,237.9
비금속광물제품	241.5	272.6	304.8	386.7	436.4	440.4
제1차금속제품	247.8	352.7	407.8	454.3	504.4	521.4
조립·금속제품·기계 및 장비	1,107.9	1,403.4	1,529.6	1,835.6	2,500.9	2,722.6
기타제조업	102.9	106.6	118.9	128.5	151.5	160.9

資料 ; 〈表 2-1〉과 同一

〈表 4-1〉 產業別 附加價值「디플레이터」의 변동추이(1)

(1980=100)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농 림 어 업	100.0	129.2	110.8	111.5	123.2	130.1
광 업	100.0	119.2	123.3	127.5	131.7	138.5
제 조 업	100.0	113.7	119.4	122.7	123.7	126.7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100.0	117.8	131.5	133.9	136.4	134.1
건 설 업	100.0	113.4	117.4	118.7	125.2	131.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00.0	115.2	122.5	126.1	132.1	136.8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100.0	126.7	140.4	143.9	145.7	148.9
금융 · 보험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00.0	108.5	100.0	118.8	122.7	127.0
정부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00.0	120.5	139.8	152.1	160.5	172.5

資料；〈表 2-1〉과同一

〈表 4-2〉 產業別 附加價值「디플레이터」의 변동추이(2)

(1980=100)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음식료품 및 담배	100.0	120.2	128.4	131.6	129.2	128.7
섬유 · 의복 및 가죽	100.0	114.2	119.0	127.3	138.0	139.2
목재 · 나무제품 및 가구	100.0	106.4	111.3	120.9	122.9	128.1
종이제품 및 인쇄출판	100.0	112.1	109.4	111.4	111.7	111.9
화학물 · 석유 · 석탄 · 고무 및 플라스틱	100.0	114.1	123.7	125.6	125.6	127.3
비금속광물제품	100.0	113.8	117.6	123.8	126.1	126.5
제1차금속제품	100.0	117.2	121.7	120.5	126.3	126.9
조립 · 금속제품 · 기계 및 장비	100.0	107.3	109.9	112.6	111.5	116.4
기타제조업	100.0	108.5	117.4	122.1	119.7	128.6

資料；韓國銀行

註；1) 新SNA方式에 의해 算出된 製造業部門의 產業小分類 附加價值「디플레이터」資料는 利用 可能하지 않기 때문에, 이 表에 나타난 數值는 舊國民計定資料에 의해 算出된 것임.

〈表 5-1〉 產出物價格指數  
消費者物價指數 × 100의 变동추이<sup>1)</sup>

(1980=100)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농 림 어 업	100.0	106.5	85.2	82.9	89.5	92.3
광 업	100.0	98.3	94.8	94.8	95.7	98.2
제 조 업	100.0	93.7	91.8	91.2	89.9	89.9
전 기 · 가스 및 수도사업	100.0	97.1	101.1	99.6	99.1	95.1
전 설 업	100.0	93.5	90.2	88.3	91.0	93.3
도 소매 및 음식숙박업	100.0	95.0	94.2	93.8	96.0	97.0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100.0	104.5	107.9	107.0	105.9	105.6
금융 · 보험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100.0	89.4	76.9	88.3	89.2	90.0
정부·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00.0	99.3	107.5	113.1	116.6	122.3

資料；〈表 4-1〉에서 算定함.

註；1) 產出物價格指數는 GDP deflator를 사용하였고 소비자물가지수는 全都市消費者物價指數를 사용하였음. 全都市 消費者物價指數는 1980年 100.0, 1981年 121.3, 1982年 130.1, 1983年 134.5, 1984年 137.6, 1985年 141.0임.

〈表 5-2〉 產業別 附加價值(GDP)의 变동추이(1)

(1980=100)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음식료품 및 담배	100.0	99.1	98.7	97.8	93.9	91.3
섬유 · 의복 및 가죽	100.0	94.1	91.5	94.6	100.3	98.7
목재 · 나무제품 및 가구	100.0	87.7	85.5	89.9	89.3	90.9
종이제품 및 인쇄출판	100.0	92.4	84.1	82.8	81.2	79.4
화학물 · 석유 · 석탄 · 고무 및 플라스틱	100.0	94.1	95.1	93.4	91.3	90.3
비금속광물제품	100.0	93.8	90.4	92.0	91.6	89.7
제1차금속제품	100.0	96.6	93.5	89.6	91.8	90.0
조립 · 금속제품 · 기계 및 장비	100.0	88.5	84.5	83.7	81.0	82.6
기타제조업	100.0	89.4	90.2	90.8	87.0	91.2

資料；〈表 2-1〉과 同一

註；1) 〈表 5-1〉의 註 1) 을 參照할 것.

〈表 6 - 1〉 產業別 労動 分配率의 變動추이 (1)<sup>1)</sup>

(單位 : %)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농 림 어 업	13.6	12.2	12.6	14.3	13.3	13.1
광 업	71.1	59.0	57.7	57.0	57.8	58.8
제 조 업	38.7	38.6	38.1	38.4	38.9	38.9
전 기 · 가스 및 수도 사업	18.4	16.0	15.3	19.0	12.5	14.5
건 설 업	58.2	55.1	55.3	56.9	57.5	58.7
도 소 매 및 음식 숙박업	27.4	26.8	26.5	26.8	26.9	26.6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46.3	44.2	41.0	46.7	46.7	45.7
금융 · 보험 ·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27.0	33.3	40.9	37.4	35.0	34.1
정부 ·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84.6	84.9	85.0	84.8	84.7	84.8

資料 ; 〈表 2 - 1〉 및 〈表 3 - 1〉에서 算定함.

註 ; 1) j 산업의 労動分配 륙은  $\frac{W_j/P_j}{VA_j/P_j} = \frac{W_j}{VA_j}$ 에 의해서 구함.

단, W는 被傭者報酬, VA는 附加価値, P는 產出物価格指數를 나타냄.

〈表 6 - 2〉 產業別 労動 分配率의 變動추이 (2)<sup>1)</sup>

(單位 : %)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음식료품 및 담배	22.7	22.0	22.3	22.1	23.4	24.1
섬유 · 의복 및 가죽	51.1	51.9	51.4	51.5	50.2	50.1
목재 · 나무제품 및 가구	76.2	67.4	59.1	60.0	57.8	56.5
종이제품 및 인쇄출판	55.6	55.4	54.7	53.5	50.1	50.2
화학물 · 석유 · 석탄 · 고무 및 플라스틱	28.9	28.3	28.7	29.5	28.2	27.9
비금속광물제품	43.4	43.5	43.1	43.1	43.6	43.2
제1차금속제품	34.4	34.9	35.3	35.8	34.7	34.7
조립 · 금속제품 · 기계 및 장비	48.2	48.3	48.1	47.3	49.4	49.4
기타제조업	48.2	47.6	46.6	45.6	45.7	44.6

資料 ; 〈表 2 - 2〉 및 〈表 3 - 2〉에서 算定함.

註 ; 1) 〈表 6 - 1〉의 註 1)을 參照할 것.

〈表 7-1〉 労組의 입장에서 본 產業別 ‘實質’勞動分配率의 变동추이 (1)<sup>1)</sup>

(單位 : %)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농 립 어 업	13.6	13.0	10.7	11.9	11.9	12.1
광 업	71.7	58.0	54.7	54.0	55.3	57.7
제 조 업	38.7	36.2	35.0	35.0	35.0	35.0
전 기 · 가스 및 수도 사업	18.4	15.5	15.5	18.9	12.4	13.8
건 설 업	58.2	51.5	49.9	49.4	52.3	54.8
도 소매 및 음식 숙박업	27.4	25.5	25.0	25.1	25.8	25.8
운 수 · 항 고 및 통 신 업	46.3	46.2	44.2	50.0	49.5	48.3
금 융 · 보 험 · 부 동 산 및 사 업 · 서 비 스 업	27.0	29.8	31.5	33.0	31.2	30.7
정부·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84.6	84.3	91.4	95.9	98.8	103.7

資料 ; 〈表 5-1〉 및 〈表 6-1〉에서 算定함.

註 ; 1) j 產業의 경우 實質 労動分配率은 다음과 같이 定義되었음.

$$\frac{W_j / CPI}{VA_j / P_j} \times 100 = \frac{W_j}{VA_j} \frac{P_j}{CPI} \times 100$$

단  $W_j$  = j 산업의 被傭者報酬 (Wage Bill)

CPI = 소비자 물가지수 (모든 산업에 同一하게 적용됨)

VA<sub>j</sub> = j 산업의 附加值 (經常價格)P<sub>j</sub> = j 산업의 產出物 價格指數 (부가가치 디플레이터)〈表 7-2〉 労組의 입장에서 본 產業別 ‘實質’ 労動分配率의 变动추이 (2)<sup>1)</sup>

(單位 : %)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음 식 료 품 및 담 배	22.7	21.8	26.6	21.6	22.0	22.0
섬 유 · 의 복 및 가 족	51.1	48.8	56.2	48.7	50.4	49.5
목 재 · 나무제품 및 가구	76.2	59.1	69.1	53.9	51.6	51.4
종 이 제 품 및 인쇄 출판	55.6	26.6	65.0	44.3	40.7	39.9
화 학 물 · 석 유 · 석 탑 · 고 무 및 플 라 스 텁	28.9	30.1	30.2	27.6	25.8	25.2
비 금 속 광 물 제 품	43.4	40.8	39.0	39.7	39.9	38.8
제 1 차 금 속 제 품	34.4	35.6	33.0	32.1	31.9	31.2
조 립 · 금 속 제 품 · 기 계 및 장 비	48.2	54.6	40.6	39.6	40.0	40.8
기 타 제 조 업	48.2	53.2	42.0	41.4	39.8	40.7

資料 ; 〈表 5-2〉 및 〈表 6-2〉에서 算定함.

註 ; 1) 〈表 7-1〉의 註1)을 參照할 것.

〈表 8-1〉 使用者 및 勞組의 입장에서 본 勞動分配率의 年度別 变動추이

(單位：前年對比增減，% Point)

	1980-81		1981-82		1982-83		1983-84		1984-85	
	勞	使	勞	使	勞	使	勞	使	勞	使
농 림 어 업	-0.6	-1.4	-2.3	0.4	1.2	1.7	0.0	-1.0	0.2	-0.2
광 업	-13.7	-12.1	-3.3	-1.3	-0.7	-0.7	1.3	0.8	2.4	1.0
제 조 업	-2.5	-0.1	-1.2	-0.5	0.0	0.3	0.0	0.5	0.0	0.0
전 기 · 가스 및 수도사업	-2.9	-2.4	0.0	-0.7	3.4	3.7	-6.5	-6.5	1.4	2.0
건 설 업	-6.7	-3.1	-1.6	0.2	-0.5	0.6	2.9	1.6	2.5	1.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9	-0.6	-0.5	-0.3	0.1	0.3	0.7	0.1	0.0	-0.3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0.1	-2.1	-2.0	-3.2	5.8	5.7	-0.5	0.0	-1.2	-1.0
금융 · 보험 ·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2.8	6.3	1.7	7.6	1.5	-3.5	-1.8	-2.4	-0.5	-0.9
정부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0.3	0.3	7.1	0.1	4.5	-0.2	2.9	-0.1	4.9	0.1

資料；〈表 6-1〉 및 〈表 7-1〉에서 算定함.

〈表 8-2〉 使用者 및 勞組의 입장에서 본 勞動分配率의 年度別 变動추이

(單位：前年對比增減，% Point)

	1980-81		1981-82		1982-83		1983-84		1984-85	
	勞	使	勞	使	勞	使	勞	使	勞	使
음식료품 및 담배	-0.9	-0.7	0.8	0.3	-1.0	-0.2	0.6	1.3	0.0	0.7
섬유 · 의복 및 가죽	-2.3	0.8	7.4	-0.5	-7.5	0.1	1.7	-1.3	-0.9	-0.1
목재 · 나무제품 및 가구	-17.1	1.2	10.0	-8.3	-15.2	0.9	-2.3	-2.2	-0.2	-1.3
종이제품 및 인쇄출판	-29.0	-0.2	38.4	-0.7	-20.7	-1.2	-3.6	-3.4	-0.8	0.1
화학물 · 석유 · 석탄 · 고무 및 플라스틱	1.2	-0.6	0.1	0.4	-2.6	0.8	-1.8	-1.3	-0.6	-0.3
비금속광물제품	-2.6	0.1	-1.8	-0.4	0.7	0.0	0.2	0.5	-1.2	-0.4
제1차금속제품	1.2	0.5	-2.6	0.4	-0.9	0.5	-0.2	-1.1	0.7	0.0
조립 · 금속제품 · 기계 및 장비	6.4	0.1	-14.0	-0.2	-1.0	-0.8	0.4	2.1	0.8	0.0
기타제조업	5.0	-0.6	-11.2	-1.0	-0.6	-1.0	-1.6	0.1	0.9	-1.1

資料；〈表 6-2〉 및 〈表 7-2〉에서 算定함.

〈表 9-1〉 使用者 및 勞組의 입장에서 본 労動分配率의 變化形態에 따른 勞使間의 得失의 要約<sup>1)</sup>

	1980-81	1981-82	1982-83	1983-84	1984-85
농 림 어 업	4(N, S)	3(N, I)	4(S, N)	2(I, S)	2(I, I)
광 업	4(N, S)	4(N, S)	4(N, S)	4(S, N)	4(S, N)
제 조 업	3(N, I)	3(N, I)	2(I, I)	2(I, I)	2(I, I)
전 기 · 가스 및 수도 사업	4(N, S)	2(I, S)	4(S, N)	4(N, S)	4(S, N)
전 설 업	4(N, S)	3(N, I)	3(I, N)	4(S, N)	4(S, N)
도 소매 및 음식 숙박업	4(N, S)	2(I, I)	2(I, I)	2(S, I)	2(I, I)
운수 · 창고 및 통신업	2(I, S)	4(N, S)	4(S, N)	2(I, I)	4(N, S)
금융 · 보험 ·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4(S, N)	4(S, N)	1(S, S)	4(N, S)	2(I, S)
정부 ·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2(I, I)	2(S, I)	2(S, I)	2(S, I)	2(S, I)
평 균	3.4	3.0	2.9	2.9	2.9

資料; 〈表 8-1〉 및 〈表 1〉에 의해서 구분함.

註; 1) 위 表의 수치 및 팔호안의 表記는 〈表 1〉에 나타난 労動分配率의 變化形態를 (Type 1, 2, 3, 4, 5) 나타냄.

2) 〈表 8-1〉에서 隔差의 크기가(절대치) 0.5이하인 경우는 零으로 간주하였음.

〈表 9-2〉 使用者 및 勞組의 입장에서 본 労動分配率의 變化形態에 따른 勞使間의 得失의 要約<sup>1)</sup>

	1980-81	1981-82	1982-83	1983-84	1984-85
음식료품 및 담배	4(N, S)	2(S, I)	3(N, I)	4(S, N)	3(I, N)
섬유 · 의복 및 가죽	5(N, N)	2(S, I)	3(N, I)	1(S, S)	3(N, I)
목재 · 나무제품 및 가구	3(N, I)	1(S, S)	5(N, N)	4(N, S)	2(I, S)
종이제품 및 인쇄출판	4(N, S)	1(S, S)	4(N, S)	4(N, S)	3(N, I)
화학물 · 석유 · 석탄 · 고무 및 플라스틱	1(S, S)	2(I, I)	5(N, N)	4(N, S)	3(N, I)
비금속광물제품	3(N, I)	3(N, I)	2(S, I)	1(I, I)	3(N, I)
제1차금속제품	2(S, I)	3(N, I)	3(N, I)	2(S, I)	2(S, I)
조립 · 금속제품 · 기계 및 장비	2(S, I)	3(N, I)	4(N, S)	3(I, N)	2(S, I)
기타제조업	1(S, S)	4(N, S)	4(N, S)	3(N, I)	1(S, S)
평균	2.8	2.3	3.7	3.0	2.4

資料; 〈表 8-2〉 및 〈表 1〉에 의해서 구분함.

註; 1) 〈表 9-1〉의 註 1)을 參照할 것.

2) 〈表 8-2〉에서 隔差의 크기가(절대치) 0.5이하인 경우는 零으로 간주하였음

〈表 10-1〉 使用者 및 勞組의 입장에서 본 勞動分配率의 變化形態에 따른 労·使間의 得失의 要約<sup>1)</sup>

		1980-81	1981-82	1982-83	1983-84	1984-85
농 림 어 업	勞 使	N S	N I	S N	I S	I I
	勞 使	S S	S S	S S	N N	S N
광 업	勞 使	N S	N S	N S	S N	S N
	勞 使	I I	I I	I I	I I	I I
제 조 업	勞 使	N S	N S	I N	I S	I S
	勞 使	I I	I I	I I	I I	I I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勞 使	N S	I S	S N	N S	S N
	勞 使	S S	S S	N N	S S	S N
건 설 업	勞 使	N S	N I	I N	S N	S N
	勞 使	S S	I I	I I	I I	I I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勞 使	N S	I I	I I	S I	I I
	勞 使	S S	I I	I I	I I	I I
운수·창고 및 통신산업	勞 使	I S	N S	S N	I I	N S
	勞 使	S S	S S	N N	I I	S S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업	勞 使	S N	S N	S S	N S	I S
	勞 使	I I	S I	S I	S I	S I
정부·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勞 使	I I	I I	S I	S I	S I

資料；(表 9-1)。

註；1) 위 表의 S, N, 및 I는 각각 ‘만족(Satisfactory)’, 불만족(Not Satisfactory), 및 ‘未定(Indifference 또는 Uncertain)’을 나타냄。

〈表 10-2〉 使用者 및 勞組의 입장에서 본 労動分配率의 變化形態에 따른 勞·使間의 得失의 要約<sup>1)</sup>

		1980-81	1981-82	1882-83	1983-84	1984-85
음식료품 및 담배	勞使	N S	S I	N I	S N	I N
	勞使	N N	S I	N I	S S	N I
섬유·의복 및 가죽	勞使	N N	S I	N N	N S	I S
	勞使	N I	S S	N N	S S	I S
목재·나무제품 및 가구	勞使	N I	S S	N N	N S	N I
	勞使	N S	S S	N S	S S	N I
종이제품 및 인쇄출판	勞使	S S	I I	N N	N S	N I
	勞使	S S	I I	N N	S S	N I
화학물·석유·석탄 ·고무 및 플라스틱	勞使	N I	N I	S I	I I	N I
	勞使	N I	N I	S I	I I	N I
비금속광물제품	勞使	S I	N I	N I	I S	S I
	勞使	S I	N I	N I	I S	S I
제1차금속제품	勞使	S I	N I	N I	I S	S I
	勞使	S I	N I	N S	I N	S I
조립·금속제품·기 계 및 장비	勞使	S I	N I	N S	I N	S I
	勞使	S S	N S	N S	N I	S S
기타제조업	勞使					

資料; 〈表 9-2〉.

註; 1) 〈表 10-1〉의 註 1) 을 參照할 것.